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8. 16 선고 2023나7259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8. 16 선고 2023나72594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0. 26 선고 2023가단10922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이드 담당변호사 신성기

변론종결 2024. 6. 14.

판결선고 2024. 8. 16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3가단10922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: 피고는 원고에게 1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
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항소취지: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,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(‘2. 결론’ 부분은 제외)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쳐 쓰는 부분

○ 제1심판결 제2면 5~6행의 ‘이에 피고가 현재까지 9,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’ 부분을 ‘피고는 2023. 4. 12.경 금융기관을 통하여 위 돈이 피고의 계좌로 착오 송금되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다가 2023. 5. 2.에야 원고에게 위 돈 중 9,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’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제2면 제9~11행의 ‘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3. 5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’ 부분을 ‘피고가 위 착오 송금 사실을 알게 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. 5. 18.부터 같은 날인 2023. 5. 18.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(피고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착오로 송금된 돈임을 알았던 이상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), 그다음 날인 2023. 5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

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’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‘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’를 ‘을 제1 내지 7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녹음’으로 고친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,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더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,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소영, 판사 장창국, 판사 이충민